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·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(안 제40조제2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윤 상 열)